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51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안철수 · 윤한홍 · 김예지
김기웅 · 곽규택 · 고동진
최은석 · 최보윤 · 김은혜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인감변경 등 신고) ①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무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인감 신고
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
3.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 제9조에 따른 사망 등의 신고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소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활 신청
6.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인감변경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과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u>제13조(인감변경 등 신고) ①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무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다.</u> <u>1. 제3조에 따른 인감 신고</u> <u>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u> <u>3.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u> <u>4. 제9조에 다른 사망 등의 신고</u> <u>5.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소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활 신청</u> <u>6.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인감변경의 신고</u> <u>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u>

	<u>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u>
--	----------------------